

의안번호	2200366
의 퇴 인	김예지 의원
회 답 일	2024. 7. 9.
추계번호	24C0757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5조(활동지원 급여의 신청자격)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던 장애인 및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되어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 ※ 현행 지원 대상: 6세 이상 65세 미만의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한 이력이 있고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 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노인성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장애인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5조(활동지원 급여의 신청자격)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신청 대상이 확대될 경우, 급여
이용자 수 증가로 인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확대되는 신청 대상 중 실제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사람의 수와 급여 이용량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위한 자료가 부재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 대상을 65세 이상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할 경우,
65세 이전에 수급 경험이 없는 사람 중 실제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신청
하여 수급할 사람의 수를 현 시점에서는 알 수 없음

- 2023년 기준 65세 이상 등록장애인은 142.5만명이고, 그중 월평균 1,185명이 65세 이전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 경험이 있어 해당연도에 장애인활동급여를 수급함
 - 개정안 시행에도 불구하고 일부 65세 이상 장애인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에 대한 수요가 없을 수 있는데¹⁾, 현 시점에서는 이들의 수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
 - 또한, 현 시점에서는 65세 이상 장애인 중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게 될 사람이 이용할 급여의 종류와 급여량을 추정하기 어려움
 - 장애인활동지원급여에는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이 있고 활동지원등급(1~15구간 및 특례구간)에 따라 월 한도액이 차등 설정됨
-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김우림	이진우

□ 대표연락처

1) 현재 65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면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음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우림	02-6788-3738	wrkim@nabo.go.kr